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80

발의연월일: 2021. 5. 13.

발 의 자: 김수흥・양정숙・윤관석

안호영 • 이상헌 • 김경만

이용호 • 유준병 • 박성준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실 거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인 1가구 1주택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납부하는 조건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 1.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일 것
- 2. 실거주자일 것
- 3.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다)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⑦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⑧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
	세의무자는 제1항 및 제3항부
	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
	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
	하는 조건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u>1.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u>
	<u>자일 것</u>
	<u>2. 실거주자일 것</u>
	3.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3천만원 이하일 것